

2026년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사업 공고 (2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4에 따른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중동 정세 불안정에 따라 원부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차질이 예상되는 기업의 경우 본 사업에의 적극 신청 바랍니다.

2026. 3. 30.
산업통상부 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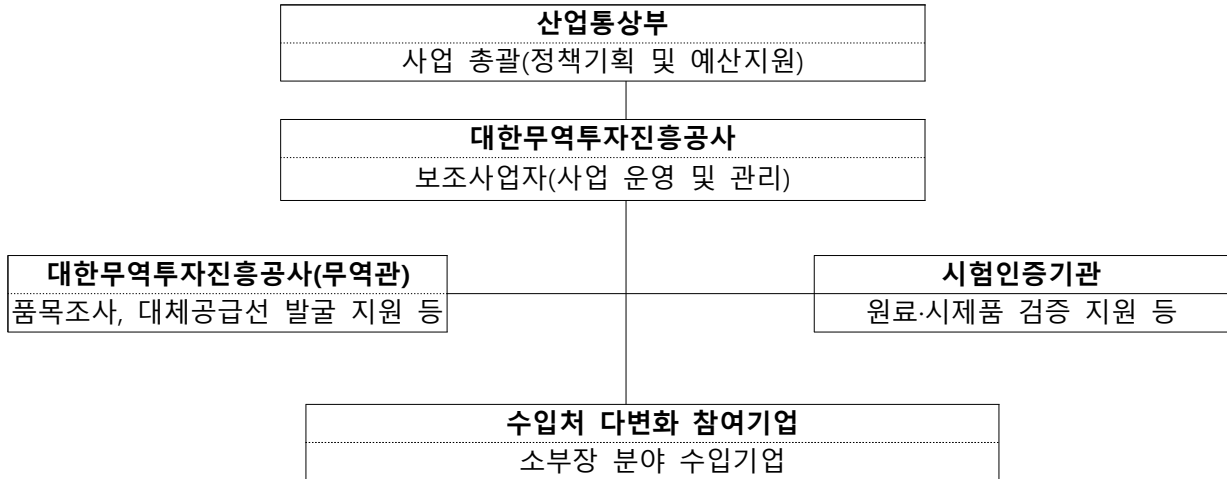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수입처다변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 산업 중소·중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역량 확보 지원
- 사업내용
 - 수입 대상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원부자재의 대체수입처를 발굴하고, 새로운 수입처 원료를 활용한 제품 생산을 지원 (기업당 최대 5천만원)
 - 대체수입처 발굴, 샘플 구입, 원료 및 시제품 시험인증, 시운전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교란에 대비하여 원부자재 수급 및 생산 안정화 필요성이 있는 국내 소부장 기업
 - * [예시] 생산제품이 NCM 전구체로 원부자재인 황산니켈의 수입국을 기존 A국에서 B국으로 다변화 희망하는 기업
생산제품이 절삭공구로 원부자재인 텅스텐분말의 수입국을 기존 A국에서 B국으로 다변화 희망하는 기업
 - 최근 중동 상황으로 원부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예상되어 수입처 다변화가 필요한 기업

□ 지원기간 : 선정기업 협약체결일 ~ 2026. 12. 31

□ 신청기간 : 2026.3.30.(월) ~ 2026.4.19.(일)

□ 추진체계



2. 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수급 차질 위험이 있는 원부자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처 다변화를 희망하는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기업당 5천 만원 한도)
지원기간	선정기업 협약체결일 ~ '26.12월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체수입처 발굴·현장검증) 기업 자체 또는 해외무역관 통한 대체수입처 발굴, 무역관 통한 현장검증 등○(샘플원료 구매) 대체수입처 샘플 구입 관련 비용 지원 (물류보관비 포함)○(시험인증) 시험인증기관을 통한 원료·시제품 검증 지원○(시운전 지원) 대체수입처에서 구매한 원료를 활용한 시제품 생산 지원

* 지원 기간 및 지원예산 등은 희망 기업 수와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세부 추진 내용 및 절차

구분	내용	업무 수행자
사업공고 및 기업모집	○ 수입처다변화 지원사업 2차 공고 실시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		
기업 선정	○ 기업 평가 및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		
대체수입처 발굴 현장검증	○ 기업 수요, 무역통계/DB 활용, 대체 공급선 발굴 대상 국가 선정 ○ 샘플 수입 대상 공급선 발굴 및 현장검증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참가기업
↓		
샘플원료 구매	○ 운영 기관 및 참가기업 협의 하에 최종 구매 원료 결정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참가기업
↓		
원료 시험인증	○ 공인 시험인증기관 통한 원료 스펙 검증, 시운전 투입 가능 여부 결정	시험인증기관, 참가기업
↓		
시운전 및 시제품 생산	○ 시운전 추진 및 시제품 생산 ○ 시제품의 기존 제품 대체 가능성 검증 (시험인증기관 인증)	시험인증기관, 참가기업
↓		
결과 보고· 정산	○ 결과 확인 및 후속 지원 ○ 소요 비용 검토 및 이체 (회계법인을 통한 사후 원가 검증 실시)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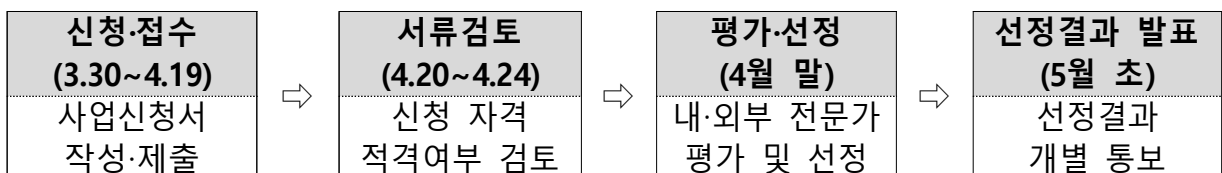
* 추진 일정은 기업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구분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신청기간	'26.3.30(월) ~ '26.4.19(일)
신청방법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기업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수입처다변화 지원사업」 신청

□ 진행절차 * 상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제출방법
1	사업신청서 등 신청서류	붙임1 활용
2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기업 및 대표자/실질경영주)	
4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등
(선택)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서	소부장넷 등

* 상기 필수서류 포함한 운영기관의 요청 서류 제출 거부 및 신청서 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 가능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그 책임은 제출기업에 있음

□ 신청 제외 대상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은 본 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 그 밖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운영기관)가 지원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5. 기업선정

□ 평가방법

- (사전검토) 사업신청서, 제출서류, 지원요건 등 사전검토
- (위원회 구성) 관련 분야 전문가, 사업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6명 내외 구성
- (평가방식) 발표평가
 - 신청기업의 사업 신청 내용 발표,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 * 발표평가가 원칙이나, 선정기업 수가 많을 경우 서면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사업 추진 적합성 · 필요성 · 효과성 등 종합 평가

□ 선정방법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하여 6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대상 선정

6. 유의사항

□ (공통) 부정 수급 등에 대한 조치사항

-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 적발 시 국가보조금법 관계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사후적으로 허위·과다청구 등 부정 수익이 밝혀질 경우, 국고 보조금 통합 관리지침 또는 공동재정환수법 등에 따른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사업 기한 준수 및 비용 정산에 대한 유의사항

- 참가기업은 공고문에 기재된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음
- 기업 총 지출액*의 80% 지원(기업별 5천만원 상한 적용)
 - * 샘플 구입비 지원 한도 : 4천만원

[기업지원금 예시]

- <<예시1>> (기업 총 지출) 샘플원료 6,000만원, 시험인증·시운전 2,000만원
=> (지원) (샘플구입비 4,000만원^{한도적용} + 시험인증·시운전 2,000만원) * 80%
= **4,800만원 지원**
- <<예시2>> (기업 총 지출) 샘플원료 3,000만원, 시험인증·시운전 5,000만원 지출
=> (지원) (샘플구입비 3,000만원 + 시험인증·시운전 5,000만원) * 80% = 6,400만원
=> (5,000만원^{한도적용}) **5,000만원 지원**
- <<예시3>> (기업 총 지출) 샘플원료 4,000만원, 시험인증·시운전 2,250만원 지출
=> (지원) (샘플구입비 4,000만원 + 시험인증·시운전 2,250만원) * 80% = **5,000만원 지원**

- 수입처다변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기업이 먼저 지출하고, 향후 KOTRA가 증빙자료 검토 후 사후 정산함
 - 참가기업은 연내 ① 대체수입처 발굴 및 현장검증, ② 샘플 구입, ③ 시험인증, ④ 시운전의 전 과정 수행 필요, 중도 이탈 시 사업비용 지원 불가
 - * 샘플 구입 정산을 위해 구입 원료의 시험 인증 및 시운전 투입 내역을 증빙해야 하며, 구입량이 아닌 최종 원료 투입량(사용량)에 대해 지원
 - **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급 불가, 수입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는 운영 기관 검토 후 예외로 적용
 - 참가기업은 비용 지출 전 KOTRA에 승인요청 공문을 송부해야 하며, 공문을 통해 승인을 득한 건만 실집행액으로 인정해 사후 정산 요청 가능 (KOTRA의 사전 승인 없이 지출된 사업비용 지원 불가)
 - * 송금·이체증 및 세금계산서 날짜가 KOTRA 승인공문 날짜 이후인 건에 한해 정산 요청 가능하며 사업비 실집행액에서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지원
- KOTRA는 참가기업 비용 지원 관련 예산 집행 필요성 및 적정성 평가를 위해 사업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음
 - (대상) 샘플 원료, 시험인증 서비스, 시운전용 소모품 등 구매 비용
 - (항목) 구매 필요성, 가격 적정성 등
 - (위원회) 관리기관, 운영기관, 회계법인, 시험인증기관·국책연구소 등의 소재 전문가 등
 - * 참가기업은 KOTRA가 사업운영위원회 개최를 위해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이 미흡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7. 관련규정

□ 근거 법률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보조사업 관련 법령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부 공고 제2021-588호, 2021.8.5.)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문의처

구분	담당
주무부처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3
운영기관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 E-mail : ybk17@kotra.or.kr / jiheeshin@kotra.or.kr Tel. : 02-3460-3322 / 3325

붙임 : 1. 2026년 수입처 다변화 지원사업 신청서

산 업 통 상 부